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2018. 10. 10.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권리장전은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생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그 보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권리장전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대학원'이라 함은 덕성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의 모든 전공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대학원생'이라 함은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위 과정을 수행 중인 대학원 과정 등록생(휴학생 포함)을 말한다.
4. '학업 및 연구'라 함은 학위과정 동안 수행하는 강의 수강 및 연구활동을 말한다.
5. '연구출판물'이라 함은 논문이나 간행물을 포함하여 대학원 과정 내에 발간한 모든 출판물을 말한다.
6. '구성원'이라 함은 덕성여자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등 덕성여자대학교에 재학하거나, 교원, 직원, 연구원 등 덕성여자대학교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
7. 이상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에 기재된 정의 또는 사회 통념에 따른 정의와 동일시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이 입학 이후 졸업 등의 사유로 학업을 마칠 때까지 적용된다.

② 덕성여자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 권리장전에서 확인된 대학원생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2 장 대학원생의 권리

제4조(사생활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연구와 학업을 이유로 건강, 안전, 혼인과 모성의 보호,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5조(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개인 존엄권) ① 대학원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연구·근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성적 정체성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받아서 아니 된다.

제7조(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평가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
- 제8조(알권리) ① 대학원생은 다음 각 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 1. 본인이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예산 및 지출
 - 2. 학과에 근로장학생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기준 등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
- ② 대학원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를 가진다.
- 제9조(학업연구권)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당해서는 안되며, 학위 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 연구, 훈련 및 멘토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④ 대학원생의 석 박사 학위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 제10조(저작권)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 과정 참여 등 연구결과물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관계 법률에 따라 저작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공저자 등록 등 연구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
- 제11조(건강 및 안전에 대한 권리) ① 대학원생은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대학원생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권리를 가지며, 대학원은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③ 대학원생은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학업 및 연구 활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제12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대학 구성원들은 이를 존중해주어야 한다.
- 제13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 ②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학과 교수회의 의결을 통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고, 대학원장(학과장 등)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학생의 신청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4조(대학구성원의 책무) ①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를 알고 이를 존중하고 실현해야할 책임을 가진다.
- ② 대학원은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해결절차)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 명시된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전항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위원회는 비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대학원생의 출석권 및 증거제출권 등 절차적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 제16조(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부 칙<2018. 10. 10.>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